

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  
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안이유

- 적용시한 만료(1991. 12. 31)에 따른 시한연장임
- 목적 : 무적차량 방지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

주요골자

-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취득세, 등록세 면제
-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록시 등록세 경감 : 1000분의 50 → 1000분의 10

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지방세법 제132조의 2